第294回國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6號(附錄)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12月2日(木)

場所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배은희 위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만들 계획인 '고용창출투 자세액공제'중소기업에 이익 없다는 주장

<현황 및 주요 문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현재)

투자부분: 임투공제, 중투공제

일자리부분: 고용증대투자세액공제(2010. 3. 1 시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시)

투자부분 : 중투공제

일자리부분:고용증대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 자세액공제 중 택 1

- ⇒ 일자리부분의 세액공제 효과는 미미 투자부분 공제만 줄어든 셈
- ⇒ 중투공제율을 높이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고용창출 가능할까 (조세일보, 10. 9. 30)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용하고 연계된 투

자를 유인하기 위해 바꾼 것 같은데, 사실 중소 기업들은 투자부분은 임투공제로 받고, 고용부분 은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받고 있었 는데. 임투공제는 사라지고 고용창출공제는 중복 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세부담이 늘게 됐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 제 신설
-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명 분 살리기 성격이 강함.
- -투자와 고용을 억지로 연결시켜 오히려 투자 위축 유발 가능성
- -기업이 신규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이미 계획 했던 고용을 하고 난 후 세제혜택만 받으려 할 가능성
-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혜 택 축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투자세액 공제와 충돌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더 바람직 (기업수 99%, 고용 88%로 경제전반의 고용유 지 · 확대효과 더 큼)

- □임시투자세액공제
 -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 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만 해당
 - ○일몰: 2010.12.31.
 - ○세율, 일몰, 대상 업종 및 지역 등 시행령 에서 규정

기재부 안(기재위 조세소위 자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 *1조 5,000억 원 세수 증가(정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 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만 해당
 - ○한도:고용증가인원×1,000만 원 (단, 청년은 1,500만 원)

○일몰: 2012.12.31.

※5,000억 원 세수 감소(정부)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애초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기보다는 임투세액공제를 당장 없애는 것에 대한 기업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명분 살리기 방안으로 보여지는데, 임투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면 고용증대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2015년까지 5,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관련하여, "5년간 5만 명 정도를 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산한 금액"이라며 "실제 고용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알 수 없어 세감면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함.

(2010. 8. 23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 제개편안 브리핑에서)

2. 기업의 투자는 한두 달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을 내다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데, 임투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투자와 고 용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 아닌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성장을 둔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와 창출을 더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는가?

3.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신규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이미 계획했던 고용을 하고 난 후 세제

혜택만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4.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한도를 정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신설로 인해 기존 혜택의 축소폭이 대기업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5. 2010년 3월부터 적용되는 '고용증대투자세액 공제제도'와 충돌 문제는 없는가?

☞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증가인원 × 300만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수혜가 되지 않으며, 유리한 쪽 선택

6. 세수확보를 위해 임투공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면, 고용창출효과가 모호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신설보다는, 일자리가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한도 3%를 현행 임투공제 수준인 7%내지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은 102만개 (87.2%)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대기업은 15만 개(12.8%)에 그치고 있음.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수>

(단위: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5~08
중소기업	1,044만	1,067만	1,134만	1,146만	102만
安 至月音	(87.8%)	(87.3%)	(88.5%)	(87.7%)	(87.2%)
대기업	145만	155만	147만	160만	15만
네기업	(12.2%)	(12.7%)	(11.5%)	(12.3%)	(12.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중기중앙회가 가공)

□ 2009년 기준으로 임투공제 신고 중소기업은 면금액은 13.7%만 차지하고 있음. 7,559개로 전체 신고법인의 90%를 차지하며, 감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개, 백만 원)

	신고 법인수	감면금액	감면금액/법인수
합 계	8,399	2,045,768	244
중소기업	7,558(90.0)	279,958(13.7)	37
일반기업	841(10.0)	1,765,810(86.3)	2,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각 부처별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제 고용 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연계 방식 확산해야

□부처별 해외 인력 파견 사업,

- '맞춤형' 정보로 실제 일자리 창출 되도록 해 야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음.

지난 3월 일자리 특위에서 해외 취업의 경우, 국내 일자리 부족과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 수요 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각 부 처별로 흩어져 있는 구인-구직 DB의 통합 관리 해 해외 취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함.

당시 이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 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국내 일자리에 한 해 부분적 진행 중

○한국고용정보원'잡로봇 시스템 구축'중(내 년 1월 구축 완료)

: 인터넷상의 공공, 민간부문의 구인 · 구직 정 보 통합관리

☞ 국내 웹사이트 중

일자리 정보 게시물 인터넷주소(URL)를 검색 추출 → 추출된 일자리 정보를 자동 검증 → 분 석한 뒤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여 → 일자리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 → 취업 정보를 필 요로 하는 곳에 자동으로 배포하는 기능

특히 노동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청년 리더 10 만 양성 사업'의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는 해외취업교육 → 해외인턴 연수 → 해외 취업 알선 등 3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 적함.

특히 인턴 재직 기간 동안 우수한 능력을 보인 직원을 다른 부처에서도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DB구축보다 더 중요한 바 있는데, 본 위원 이 조사한 바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 임.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시 해외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 노동부 가 주도적으로 확산!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중 부산의 우수 사례 정부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올해 일자리 창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시 해외청년인턴 취업사업의 경우, 기존의 단기 해 외 연수 차원을 넘어 산학관 연계 등 '맞춤형'으 로 인재를 파견함.

즉 장기 근무를 원하는 현지 법인을 발굴하고, 학생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매칭까지 시켜 줌. 그 결과 파견 인턴의 60% 이상이 취업되는 등 청년 실업해소에 큰 역할을 함.

총괄 부처로서 단순한 DB 제공을 넘어서 이와 같은 좋은 사례를 각 부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부산시 해외청년인턴 취업사업 특징

-인턴비용, 외국어 교육지원 등 지원, 중국 등 아시아권과 미주, 유럽 등 구인 기업체가 소재하 는 국가 해외 현지기업체의 구인수요에 맞는 맞 춤형 인재 공급

* 기간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

대상 및 파견 인원: 48개국을 대상으로 해 외인턴 3,402명을 파견,

취업률: 파견 인원의 60.6%인 2,062명 취업 등의 실적을 달성

해외 인턴의 경우 우수한 인력이 채용되어야 국가 이미지와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수요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 공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한 '청년 해외 인턴십'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갖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 필요

- -청년취업 아카데미 379억 신규 사업 도입보 다 기존 대학취업지원센터 등 개선 및 보완으로 효율성 확대
- -청년고용할당 권고 → 의무제,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 -청년인턴제:중소기업 자격조건 완화 필요
- ; 인턴연령확대(29세→ 40세), 5인 미만 사업장 도 실질적 지원해야!

<현황 및 주요 문제>

- 1. 11년 기재부 고용서비스분야 확대:청년취 업아카데미 379억 순증
- → 기존의 대학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내실화 필요
- : 사업확대나 신규사업의 진행만이 중요한 것 이 아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채용목표 달성이 09 년 45% 수준

- 원인: 3% 이상 채용기준이 권고에 그침. → 강화된 규정 필요
 - -대기업 청년 고용비중은 전체대비 평균 2.1%

낮음(02~09)

-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 중소기업의 86%, 5인 미만 사업장은 혜택에 서 제외
- : 09년 20% 제한 → 10인 이하사업장 : 1~2명 만 지원됨.
 - → 정부지원 비율/조건 확대
- -중소기업 인력문제; 대기업 선호 경향에 피해 청년인턴제 대상인력-청년연령(15~29세)
 - → 40세 확대: 경력 인력수급에 도움.
- -대학생취업지원센터에서 직장 인식 제고 교육→ 중소기업지원 유도

<질의>

내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로 397 억을 책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의 기존 취업담당센터를 활 성화하면 가능한 사업임.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 은 신규사업은 지양되어야 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산업체 주도로 4년 제 대학의 4학년 1만여 명 대상 16~20주 정도체계적 이론 교육과 실습훈련을 제공, 인턴을 거쳐 취업을 알선. 11년 397억 신규.
- -대부분 대학의 취업담당 기존센터:취업지원 센터,취업지원실 등 존재
 - : 취업담당기관이나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

고 있는 실태

: 일부는 센터에서 대학생 창업지원도 하고 있음.

각 대학의 취업담당 기존센터와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닌가?

교과부와의 업무 연계로 효율적인 운영 바람.

기존 센터의 운영 실태와 효율성 제고, 활용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해 주길 바람.

청년인턴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중소기업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지원대상기업의 확대지원이 절실한 이런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못함.

청년인턴제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시행 되는 것으로 안다.

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을 완화해 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토 후 보고해 주길 바람.

○홍영표 위원

(고용노동부)

◈재탕·삼탕 백화점식 국가고용전략 비전 있나?1) 현황

□2010년 10월 12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2020국가고용 전략'을 발표

○당초 2010년 6월 발표 예정

<국가고용전략 2020 주요 내용>

제도	내용	도입 시기
파견허용 업종 조정	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 터 등 추가	2011년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예외대상 조정	신설기업 기간제 근로자, 청소· 경비 업무 등 추가	2011년 상반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연장·휴일·야간 근무시간을 휴 가로 대체	2011년 상반기 법 개정
사내·건설 하도급 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 드라인 마런 정부발주 공사 원가에 적정임금 사전반영 검토	2011년
시간제근로자 확대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 (2012년까지 2만 명) 전일 휴직 외 부분육아휴직제도 도입	2011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 2011년 1월부터 신규 시간제 근로자 임금 지원

제도	내용	도입 시기
시간제근로자 확대	공공부문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산 신규 시간제 근로자 임금 50%(월 40만 원 한도) 지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1/2 이상 감소할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 크제 보전수당의 50% 지원	2011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 피크제 지원 폐지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집중 실시	2011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에 대해 노동계 와 경영계,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결같이 냉담함. ○새로운 정책이 거의 없고, 실효성에 대한 의 문도 제기됨.

- 2) 문제점 및 질의
- □국가고용전략과 같은 중장기 국가고용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노동부는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2004~2008년을 내다 보는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을 세움.

□국가고용전략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 전략회의에서 나왔고, 고용정책기본계획은 노동 부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나왔음.

○문제는 '범 정부차원의 고용전략'과 '노동부 차원의 고용계획'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임.

<고용정책기본계획과 국가고용전략 비교>

	고용정책기본계획(2004~2008)	국가고용전략(2010~2010)
성장과 고용	-기업성장 통한 고용창출	-고용과 성장의 동행
고용안정과 유연성	-안정성과 유연성 동시 추구	-공정성과 유연성 추구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고용	-육아휴직 요건 완화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시간제 육아휴직제, 가족간호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저축제
7 24 7) 7 Q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 고용	-고령자 적합직종 발굴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
청년 고용	-인턴 거쳐 취업	-전문인턴 과정 뒤 취업
장선 고등	-해외연수 지원	-해외인턴·연수 활성화
ul 7l 7. 7l	-파견업종 확대하여 차별 방지	코거어조 하네 보비코거 가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보호	-파견업종 확대, 불법파견 감독
	사회적 기업 발굴	사회적 기업 확대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지역일자리 공시제

질의1) 장관, 고용정책기본계획과 국가고용전 략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고용정책기본계 획의 안정이라는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노동 유연성만 강조함으로써 비정규직만 양산하 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의 실체 아 닌가?

□고용정책기본계획에는 "향후 고용정책은 사

회안전망 보완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

○이를 위해 임시·일용직이나 60세 이후 고용 된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 하더라도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 1) 대부분 재탕, 삼탕 불량일자리 만들기
- □2010. 10. 12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가고용 전략은 지난 1월부터 발표한 주요 고용정책을 재 탕한 것이 대부분
- ○새로운 내용은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업종과 파견업종을 확대하 겠다는 것임.
- -사무경리·제품 및 광고 영업 등에 대한 파 견확대
- □주 4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이미 포함되 어 있는 것
- ○지역일자리 공시제와 사회적 기업 1000개 육성,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은 1~5월 매달 발표된 국가고용전략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개됐던 내용들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근로시간단축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고,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었던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강화시키겠다는 것
- 질의2) 장관, 2009년 6월 '100만 실업대란설'을 제기하면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추진했던 것을 교모하게 말만 바꿔 기간제사용제한 예외업종을 확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질의2)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업종 확대를 추진 하겠다는 것은 불법불량일자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 편들기 아닙니까?
 - 2) 고용불안, 불법 불량일자리 합법화 정책
- □파견허용업종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지금도 고용이 불안한 직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불 안을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임.
- □신설기업과 위탁계약기간이 있는 청소, 경비업무를 기간제법 적용에서 예외로 할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대폭 증가될 것이고 신설기업의 기간제 사용이 상시화 될 것임.
- ○현재 영업 중인 하청 및 용역업체들이 폐업 신고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법 적용을 받는다면 청소, 경비업무는 모두 기간제 법 적용 예외 사업장이 될 것임.
 - 질의4) 지금도 청소, 경비업무 대부분은 기간

- 제 근로자임. 신설기업과 위탁 계약기간이 있는 청소·경비업무를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할 경우 폐업신고·신규법인 신설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 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제조업 사내하도급과 건설현장의 하도급 개선방 안을 내놓음.
- ○서면근로계약 정착,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강화방안도 발표
- 질의5) 장관, 정부가 고용질서 강화방안은 관 런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이나 점검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안 아닌가? 그럼에도 국가고용전략 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 아닌 가?
- 3) 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지원, 노동자에겐 고용불안 불량일자리 제공
-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012년까지 간호사 1만 명을 중소병원에 취업시키겠다는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는 실효성이 없는 이름만 그럴듯한 계획
- 질의6) 장관,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짝퉁 버전 아닌가?
- 질의7) 병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면, 정부가 1년 동안 1인당 4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2009년 말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 등록자 14만여 명이지만 부족인력은 2만 2000명에 불과.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간호사직을 떠나간 여성들을 불량 일자리로 유인할수 있다고 보는가?
-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2020은 기존의 일자리 정책기조와 다를 바 없는 정책이 고 한마디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만 확 대하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질의8)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파견허용업종 확대 그리고 사내 하청 불법파견 문제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한 정책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 □총 18개의 주요 추진과제 중 지역일자리 공 시제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11 개가 노동부가 단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이 가운데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는 대부분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보험 기금사업이며, 상용형 시간제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등이 대표 적임.

○기획재정부와 관련 있는 사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고용확대형 재 정추진뿐임.

□기업이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000만 원의 세 금을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질의9)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노동비용 증가보다 적어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하 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결론적으로 그간에 발표된 정책과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여 백화점식으 로 나열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한 허울만 좋은 정 책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불량일자리로 나누고, 불법일자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비정 규직만 양산하는 정책임.

□각 부처 주요사업의 고용창출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고용영향평가제도는 '고용중 심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로 분류되지만 이마저도 '사후평가 위 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각 부처가 예산을 쓰기 전에 평가를 해야 하 는데, 예산을 쓰고 나서 뒤늦게 평가

질의10)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각 부처가

먼저 요청할 때만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데, 성 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용 중 심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사전에 고용영향평가를 해 결과가 나쁘면 제재를 가하는 등 최소한의 조 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 가?

○박준선 위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1. 현황

○일자리 대책은 금융·상품·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일자리와 관련한 경제・산 업·노동·복지·교육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크게 직접 일자리사 업(고용창출사업: 청년인턴사업, 사회서비스사업, 단기일자리사업 등)과 간접 일자리사업(고용유지, 고용촉진,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분류

○2011년도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안(일자리 관 련 각 기금사업 포함)은 2010년도 일자리사업 예 산(총규모 8조 8,986억 원) 보다 848억 원이 감액 (전년도 대비 1.0% 감소)된 총 8조 8,137억 원 규모로 편성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9년도 예산	구분	2010년도 예산(A)	2011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12,119,919	합계	8,898,551	8,813,722	△84,829	△1.0
○직접일자리	4,707,282	○직접일자리	2,727,040	2,516,279	△210,761	△7.7
○교육 및 훈련	1,469,835	○직업훈련	1,151,771	1,123,464	△28,307	△2.5
○고용유지	597,296	○고용장려금	881,830	823,434	△58,396	△6.6
○고용촉진	5,345,506	○고용서비스	249,549	320,154	70,605	28.3
		○창업지원	138,606	156,678	18,072	13.0
		○실업소득 유지·지원	3,749,755	3,873,713	123,958	3.3

-분야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전 년도보다 2,108억 원이 감액(7.7% 감소)된 2조 5.163억 원이 편성되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 우도 전년도보다 283억 원이 감액(2.5% 감소)된 1조 1,235억 원이 편성되었음. 고용장려금의 경우 전년도보다 584억 원이 감액(6.6% 감소)되었으 나, 고용서비스의 경우 전년도보다 706억 원이 증액(28.3% 증가)되었음.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은 대상자에게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단기일자 리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되고, 2011년도에는 전년 도(2조 7,270억 원)보다 2,108억 원이 감액(7.7% 감소)된 2조 5,163억 원이 편성되었고, 실시사업

도 2010년 97개 사업에서 2011년에는 18개가 감 소된 79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지역고용창출 관련 예산 현황

-주요 지역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고용노동부과 행정안전부가 담

당하며 2011년 예산안은 2,138억 원 규모로 편성 -행정안전부의 경우 1,244억 원 규모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2011년 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 *동 사업은 2009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단기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연장된 성격이 강함.

<2011년도 주요 지역고용창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백만 원,%)

	2010	2011		
	예산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고용노동부]	38,049	89,390	51,341	134.9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9,528	32,458	12,930	66.2
지역일자리공시제	_	293	293	순증
사회적기업육성(지자체보조)	18,521	50,939	32,418	175.0
시군별사업체고용동향조사	_	5,700	5,700	순증
[행정안전부]	_	124,400	124,400	순증
지역공동체 일자리	_	124,400	124,400	순증
합 계	38,049	213,790	175,741	461.9

2. 문제점 및 질의

가. 예산안 편성방식 문제

☞ 일자리 대책사업의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예산사업을 일자리 사업여부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가 심사하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총리실 공동으로 확정한 일자리 사업 목록에 따라 취합하는 방식(Bottom-Up)임. 이런 방식으로는 주요사업의 방향은 설정할 수 있으나, 일자리대책사업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주무부처가 경기 및 고용시장 전망, 고용영향평가,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배분하는 방식(Top-Down)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의 생각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부처 간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일자리사업을 고용창출 효과 등 노동시 장정책 측면에서 평가·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 였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의 생각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조정에 있어 일자리사업을 경제정책측면보다는 고용·노동 정책의 측면에서 직접일자리, 고용유지·고용촉진 지원금, 교

육훈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보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생각은?

□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심의 시 개별 사업을 재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과 함께 노동시장정책 관점의 평가도 실시되어야 하고, 일자리사업 분야별 재원 배분 및 전체 재정규모를 정할때에는 노동시장 상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야 할것임. 이러한 과정은 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와조직화된 부처별 기능분담이 필요하므로, 이러한체계를 구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생각은?

나.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지 못하고 임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음.

-직접 일자리창출사업 중 상당한 부분의 사업은 2008년 말 경제위기 시 민간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한시적인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신설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기획재정부장관의 생각은?

- 한시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단순한 소득보전에 그치지 않고 일반국민들의 생 활환경 개선이나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후에도 민 간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생각은?
- ☞ 2009~2010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 영된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2011 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유지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의 경기회복을 반영한 예산 조정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기 획재정부장관의 생각은?
- * 2011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지원 예산은 55 만 명에게 2조 5,163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 성되었으나, 전체 취업자 수 2,350만 명 중 고용 보험 사각지대가 1,385만 명(58.9%)임을 감안하 면 잠재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 규모 는 더 큼.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제위기 시에 도입되면 경기가 회 복되더라도 쉽게 조정되기 어려우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의 취업연계효과를 제고하 는 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를 줄이는 방향 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재 정부장관의 생각은?

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관련

- ☞ 지역고용창출 지원사업이 분산되어 각 부처 가 개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면, 어떤 지역일 자리를 창출해야 하는지, 지역고용전략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단순히 재정지원 직접일 자리 창출 위주로 지원되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지속성 미흡, 질 낮은 일자리)이 그대로 재현될 소지가 있음. 또한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함 으로써 지자체의 고용정책 추진에 제약이 될 우 려가 있음.
- -지역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역 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정책'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역고용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방향설정을 하되, 장기적으로 고용정책 주무부처 인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용노동 부장관의 생각은?

- ◈세제개편으로 고용창출할 수 있을까?
 - 1. 현황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8. 23)>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1)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 기 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신설.
-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2) 지역특구·외투기업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 티브 신설
- -과다한 조세감면 혜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부터 지역특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 제지원의 한도가 설정됨. 또 외투기업 등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세티브도 신설
 - (3)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 제 대상이 확대됨. 고용요건과 최대주주지분율 제한 등이 완화됨.
- (4) 청소업 등도 중기특별감면 및 창업중기 세 액감면 대상
- -취약계층 고용증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중 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 상업종에 청소업, 경호서비스업, 여론조사업, 고용 알선업 등이 추가됨.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 신설
-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 원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50% 감 면해 주기로 했음.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 부터 적용
 - (6)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수준인 7%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 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7) 사회적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
-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는 소득세, 법인세 감 면제도 일몰을 오는 2013년 말까지로 연장

(8) 사회적 기업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를 법인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개인은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됨.

2. 문제점 및 질의

- 급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니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상위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지원을 첫 번째 하위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국가의 세제 및 예산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정책이념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어느 정부하에서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노'나 '사' 모두가 부정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창출분야일 것임.
-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에서 여느 때와는 달리 특히 고용창출을 최우선 실천과제로 앞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명래 분배는 성장을 통하여 선순환되는 것이 정상임. 분배의 메커니즘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투입에 전체 국민이 참여하여 나름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를 받는 것이 정배열의 진전 패턴임.
-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 여하는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들이 손을 보여 가면서 개입할 일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전 향적인 방향으로 창출되고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진행순서라고 생각되는데?
- -이는 시장원리에 따를 때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고 비용도 최소화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는데?
- □ 금년 세제개편에서 고용창출을 제1위의 과 제라고 해야 할 만큼 지금의 고용문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드러나 보이도록 해야 하는 시급 한 과제가 되었음.
- -금년 세제에는 특히 사회취약계층 고용, 지 방골프장 고용 등 주로 '현상유지형 고용창출'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두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 는데?
- -그러나 전자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큰 이념의 구체화라고 보기

- 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현상유지형 소득대책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고, 후자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명하여 아쉬움이 남는데?
- -따라서 이러한 현상유지형 고용창출을 벗어 나 적극적인 '구조개선형 고용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시 청년고용의 문제가 국가정책 의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 □ 지금은 역시 '청년고용 천하지 대본'이라고 할 만하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의 청년 일자리의 창출은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현상적 의미를 훨씬 뛰어 넘는 가치를 지 님.
- -따라서 장기적인 세제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세제에 대한 비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 -국가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청년고용의 문제인식은 좁은 생산공간에 많은 우수한 인력이 완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고 보는데?
- -세제로서는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항구적으로 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짐.
- (국 '구조개선형 고용'의 해결을 위하여는 역시 전체 국민의 고용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 여 그에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 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배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는데?
-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구조의 선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전제로 한장기적인 고용정책조세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보는데?
- ☞ 추가로 사족을 붙이자면 '구조개선형 고용' 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적지 않음.
- -고용은 개인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함. 그리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도 맞물려 있는 중요 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 -사회적으로 평판도가 높은 직업군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개인에 대한 평가도 그에 따라 상승하며, 사회적인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상응하여 에스컬레이트 되기 마련임. 이는 개인의 품격의 구조개선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 -대학생 고용은 이와 같이 개인의 생애주기 또는 업적 성취주기 외에 다음과 같이 가족단위 또는 사회단위에서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

음이 발견된다고 보는데?

☞ 고용을 통한 취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가족 의 구성을 위한 혼인의 시기가 늦어지며, 고용이 불안하여 지면 그에 따라 출산과 육아가 늦어지 게 되어 사회의 구조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부정 적으로 개편되게 됨.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은 결국 개인이 스스 로 해결하는 대신에 사회 또는 국가의 비용으로 계상됨.

-작년 한해의 통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출 산증가를 위해 투입한 관련 예산만 5조 원에 달 한다고 함.

-고용이 해결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부담을 계상해보면, 연금부 담이 50조, 의료보험부담이 80조, 학자금 부채가 10조정도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됨.

-참고로 금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대효 과는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결국 고용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이기는 하지 만 성장의 문제이기도 한다고 보는데?

◈실업급여 재정악화, 대책마련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고용보험기금 계획안 현황

-2011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수입 및 지출은 전년 대비 1조 6,862억 원(18.7%) 감소한 7조 3,406억 원이 편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비 지출은 전년 대비 474억 원(2.5%) 감소한 1조 8.761억 원, 실 업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700억 원(2.0%) 증가한 3조 5,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751억 원 (22.4%) 증가한 4,111억 원이 편성

* 고용보험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분리되어 관 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계정으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는 실업급여 계정으로 관리

○실업급여 계정 재정악화

-2011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1조 263억 원의 적 자를 기록할 전망이고, 누적적립금은 전년 2조 6,122억 원에서 1조 5,859억 원으로 감소하고 당 해연도 지출액 대비 누적적립금 배율은 전년 0.7 배에서 0.4배로 하락할 전망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07년부터 적

자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5년(2007~2011년)간 연 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2년 이후 모성보호급여액 급증 등의 요인으로 1999~2011 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46.1%에 달해, 동 기 간 수입 증가율(13.1%)의 3배 이상에 달하기 때문 2. 질의

☞ 고용보험기금이 신설된 이후, 보험료율 인 상 등 수입 측면의 제도 변화가 거의 없어 1996~ 2011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3.1%에 불과함.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업급여계정 재정기준선 전망 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보험료율 및 급여제도의 변화 없이 현행대로 운용된다면 실업급여계정 적 립금은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와 관련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 수입은 2011~2015년 중 매년 3.3~4.1조 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5.6%)이며, 지출은 매년 4.3 조~5.7조 원(연평균 증가율 7.5%) 수준으로 예상

☞ 당기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재정불안정은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직 근로자 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고용보험의 기 본적인 역할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 급여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이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나 지출소요가 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1.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지급기간 중 에 조기 취업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 로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 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구직급여 자체가 취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급여항목 간 중복혜택이며, 이미 재취업 가능성 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2. 조기재취업수당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2,14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2011~2015년간 1조 5,254 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

☞ 실업급여계정 당해연도 지출액 대비 누적적 립금 배율은 2009년 0.8배로, 「고용보험법」 상의 적정 배율(1.5배~2.0배)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에는 0.7배, 2011년에는 0.4배로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되어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 현황

○10월 사업체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최근 5개월째 꾸준히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11월 26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고용동향조 사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근로자는 1376만 6000 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견줘 9만 2000명(0.7%)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음.

-전년 같은 달 대비 근로자 증가율은 6월 1.9%, 7월 0.9%, 8월 1%, 9월 0.5%를 기록했음.

-상용근로자는 1117만 7000명으로 34만 7000 명(3.2%), 일정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종사자는 72만 6000 명으로 2만 명(2.8%) 각각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86만 3000명으로 27만 5000명(12.9%) 감소

-산업별 증가인원은 제조업(9만 2000명), 건설 업(9만 1000명), 사업시설업(7만 1000명) 등의 순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빈 일자리는 15만 8000개로 9000개(5.5%) 줄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중소기업은 근무여건이 열악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을 위해 재수・삼수를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보여짐. 본 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격차를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공감하는지?

□ 본 위원은, 교육 노동 산업 등이 복잡하게 얽힌 청년실업 문제는 기존 생각과 통상적인 노 력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듬. 지금까지 익 혔던 지식 경험 노하우를 버려야 해법이 나온다 고 보는데?

☞ 본 위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노동시장 의 정책 패러다임을 '일감과 일거리' 차원을 넘어 '일꾼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취업 능력이 취약한 고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졸 이하 청년 고용률이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일수 있다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본 위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선두에 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고용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각종 제약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중견기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음.

-신성장 분야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기업을 키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대부분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아직도 1970년 대 구로공단과 같은 낡은 이미지를 떠올림. 정부 가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박준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일자리 사업의 기획조정에 있어 일자리사 업을 경제정책측면보다는 고용·노동 정책의 측면에서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생각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함.

○그간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 율화방안'(10. 7. 6)을 마련하여,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09. 10, 10. 11)을 통해 취약계층 우선 고용 등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 게 협조하여,

-일자리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 가겠음.

2. 일자리사업 분야별 재원 배분 및 전체 재정규모를 정할 때에는 노동시장 상황 및 전망 고려 필요.

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와 조직화된 부처 별 기능분담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체계를 구 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위원님 지적처럼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일자리 정 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의 조정이 제 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체 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그 일환으로 현재 일자리 대책 사업의 효율 화를 제도화시키는 방안은 추진 중에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신영수 의원, 10. 9. 3)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 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 야 한다.

-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에 따른 개선과 예산반영 의견 제시
-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 통보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 산반영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의 보고

3. 지역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이 주도하 는 지역분권형 고용정책'이라는 당초의 목적 에 맞게 운영되고 지역 고용전략에 대한 충 분히 논의를 거쳐 방향설정을 하되, 장기적으 로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로 일원 화하여 총괄 관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근 '지역 일자리공시제'라는 지역고용활성 화 전략을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일자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도 의 지역분권형 고용정책'을 실현하고 있음.

※'지역 일자리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중 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컨 설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앙-지방 간 일자 리 협력사업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 해 지역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 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경상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09년~10년 경제위기 시 추진한 한시적인 직 접일자리 지원사업인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인 건비 지원중심의 일자리사업과는 사업목적 및 지 원내용이 다름.

-또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 역 주체가 발굴ㆍ시행하므로 '지역 주도의 지역 분권형 고용정책'이라는 취지에 부합

○한편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는 자치단체의 책 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자치단체의 재정부 담' 및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추진의 제약이라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효과적인 지역고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 치단체 관련 행정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행안부 와 고용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자치단체와 적극적 으로 협력하여 지역고용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창 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고용보험기금이 신설된 이후, 보험요율 인 상 등 수입 측면의 제도 변화가 거의 없어 1996~2011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3.1% 에 불과함.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업급여계정 재정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보험 요율 및 급여제도의 변화 없이 현행대로 운 용된다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실업급여 계정의 사업*은 주로 법률상 의무 지출 지원금으로 되어 있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구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따라서 조만간 실업급여 보험요율 조정을 추 진할 계획

* 적립금이 법정적립배율(실업급여계정:1.5~ 2배)을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 조정을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 함(노사정합의문, 08. 10. 29).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화, 모성보호·육 아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추진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5. 당기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재정불안정은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고용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이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나 지출소요가 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구직급여 자체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급여항목 간 중복혜택이며, 이미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고, 구직급여를 절감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의 하나로

-구직급여는 구직활동기간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급여로서 조기재취업수당과 중복혜택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음.

-10. 2. 8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기간·잔여기 간 30일 미만 취업 시 미지급 및 취업 6개월 경 과 후 지급으로 변경

※10. 9월 말 현재 취업촉진수당으로 1296억 9900만 원(5만 6,785명)을 지원하여 전년 동기대비 67.3% 감소[09. 9월 말 3967억 8700만 원(16만 9,672명) 지원]

○11년도 중 제도개선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음.

6. 실업급여계정 당해연도 지출액 대비 누적 적립금 배율은 2009년 0.8배로 「고용보험법」 상의 적정 배율(1.5배~2.0배)를 충족하지 못 하였으며, 2010년에는 0.7배, 2011년에는 0.4 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적립금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보험요율 조정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법정 적립금 수준 유지를 위해 조만간 실업 급여 보험요율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적립금이 법정적립배율(실업급여계정:1.5~

2배)을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 조정을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 함(노사정합의문, 08. 10. 29).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화, 모성보호·육 아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추진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7. 중소기업은 근무여건이 열악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을 위해 재수·삼수를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보여짐. 본 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격차를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공감하는지?

○위워님 견해에 동의함.

○정부차원에서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민간부문에서도 동반성장을 고용측면에서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전경련 주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음.

○지난 10월 14일에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 기-제1차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추가적인 대책 을 준비 중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내복지 확충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문제는 동 대책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임.

8. 본 위원은 교육 노동 산업 등이 복잡하게 얽힌 청년실업 문제는 기존 생각과 통상적인 노력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듬. 지금까 지 익혔던 지식 경험 노하우를 버려야 해법 이 나온다고 보는데?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함.

○청년 고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요인 과 고용정보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등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시원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음.

* 실업률 등 지표상으로는 선진국보다 양호하 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기존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보완· 발전시키면서 창조적 발상으로 급변하는 현실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8-1. 본 위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노동시장의 정책 패러다임을 '일감과 일거리' 차원을 넘어 '일꾼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위원님 견해에 동의함.
- ○현재에도 중소기업에는 인력부족으로 빈일자 리가 많고, 신성장 첨단사업도 역량있는 인재부 족으로 자체 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 는 현실임.

* 인력부족현황

- 부족인원(2010년 상반기): 28만 5000명(부족률 3.3%)

규모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부족률	5.3%	4.0%	3.3%	2.5%	1.7%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산업수요에 적합한 청년 일꾼을 양성하여 효율적 으로 매칭시켜 주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9. 취업능력이 취약한 고졸 이하 청년층에 대 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 -고졸 이하 청년 고용률이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대졸 이상자에 비해 고졸 이하 청년의 실업 률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봄.
- * 학력별 실업률(10.10월): 대졸이상 3.4%, 고 졸 4.0%, 중졸 2.6% 초졸이하 1.5%
- * 학력별 고용률(10.10월): 대졸이상 75.1%, 고 졸 61.7%, 중졸 40.4%, 초졸이하 41.4%
- ○취업애로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뉴스 타트 프로젝트(2011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로 통 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 -청년 취업인턴도 고졸이하 청년 1만 명 취업 지원을 추진 중(대기업 취업도 지원)에 있음.
 - 10. 본 위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등을 공공 부문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선두에 설 필요가 있 다고 보는데?
-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청년들이 선호하 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겠으나, 공공부 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따라 '청년 내 일 만들기-1차 프로젝 트'에서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 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 내지 재정지원을 통해 7 만 1000개 이상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함.
- ○다만, 각 기관의 특성과 사정이 다양한 상황 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 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 에서도 노력 의무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함.
- -각 기관이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청년 고용확대를 권장해 나 가겠음.

10-1.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고용보험 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선 채용장려금, 고용창 출 투자세액 공제 등 재정지원과 함께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 포상할 계획임.
- ○고용보험료 할인 방안에 대해선 사중손실, 형평성,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보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
 - 11.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각종 제 약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중견기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음.
 - -신성장 분야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기 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과 혁신형 가젤 기업에서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 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을 키울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창조적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신성장 녹색에너지 산업, 서비스 산업 등에서 글로벌 챔피언이 나올 수 있 도록 노력

12. 대부분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아직도 1970 년대 구로공단과 같은 낡은 이미지를 떠올림.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 해는?

○중소기업과 공단의 이미지가 회색빛에서 미 래가 밝은 녹색·청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함.

- 구로공단도 이미 첨단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 했음.

○청년들에게 창조적 도전의 기회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보다 청년친화적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확대를 부탁드림.
- * 청년 녹색일자리 홍보 예산: 7억 원 → 5억 원(환노위에서 2억 삭감)

(배은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지난 3월 일자리 특위에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구인-구직 DB을 통합관리해 해외취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당시 이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외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는 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World Job site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정보도 링크 방식으로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DB 통합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다만, 해외취업지원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 인턴의 경우 전문대교협 등과 협의를 통해 DB입수 중이며, 봉사단원은 현재 KOICA와 MOU 체결한 상태

-2011년부터는 해외인턴,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도 DB화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할 예정

2. 고용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양성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외취업교육 → 해외인턴 연수 → 해외

취업알선 등 3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특히 인턴 재직 기간 동안 우수한 능력을 보인 직원을 다른 부처에서도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DB 구축보다 더 중요한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으로 보임.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인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함.

-어학 등 사전교육과 현지 인턴을 거쳐 취업 알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봄.

○현재는 인턴 참여자와 인력공단의 연수를 거친 뒤 취업알선하는 프로그램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

* 교과부 해외인턴 경험자들의 DB확보를 통해 해외취업의 구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 중(해외인턴의 경우 전문대교협 등과 협의를 통 해 DB입수 중)

3. 올해 일자리 창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시 해외청년인턴 취업사업의 경우, 기존의단기 해외 연수 차원을 넘어서 산학관 연계등 '맞춤형'으로 인재를 파견함. 총괄 부처로서 단순한 DB 제공을 넘어서 이와 같은 좋은 사례를 각 부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부산시 사례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 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현재 검토 중인 개선방안에 반영토록 하겠음.

4. 내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로 379억을 책정했으나, 대부분 대학의 취업담당 센터를 활성화하면 가능한 사업임.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존 취업센터는 기초적인 면접, 구직기술 지도와 부분적인 취업알선 기능에 그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수요자 관점에서 산업계 가 주도적으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짜서 교육한 후 현장체험을 거쳐 취업으 로 연결시키는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임.

-내년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각 시도별 2~5 개 정도 운영할 계획임.

5. 각 대학의 취업담당 기존센터와의 현황파 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닌가? 교과부와의 업무 연계로 효율적인 운영 바람. 기존 센터 의 운영 실태와 효율성 제고, 활용에 대한 검 토 후 보고해 주길 바람.

○정부는 2006년부터 대학의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 -올해 5월에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 여 추진하고 있음.
- -대학의 취업지원실 관계자, 취업지원관 등과 유기적인 협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과부, 지경부 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교육청 등 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음.
 - 6.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중소기업에 얼마 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약 86%가 됨)

지원대상기업의 확대지원이 절실한 이런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못함. 청년인 턴제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시행되는 것 으로 안다. 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을 완화해 제 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가? 검토 후 보고해 주길 바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취업인턴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창직·창업인턴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허용하고 있음.

○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청년인턴 연령은 15~29세로 하되, 군복무자 에 대해선 복무기간을 감안, 31세까지 연장 허용. 40세까지 허용하는 것은 청년인턴사업 성격에 맞 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

(홍영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장관, 고용정책기본계획(04~08)과 국가고 용전략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고용정 책기본계획의 안정이라는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노동 유연성만 강조함으로써 비 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 고용전략의 실체 아닌가?

□고용정책기본계획과 국가고용전략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용정책기본계획(04~08)과 국가고용전략은 양자 모두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다만 금번에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은 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적인 고용대책이 며, 고용·성장·분배의 선순환을 기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님.

- -특히 예산·조세·금융·조달 등 국가 정책 수단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용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중요한 변화
- *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는가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
- -또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제정, 특화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간호 인력) 등 새로운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제도, 건설하도급 등 지속적으 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힌 것도 의미가 큼.

□국가고용전략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 닌지

○국가고용전략은 일자리의「양과 질」개선을 동시에 지향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파견·기간제 등 고용 규제 합리화 등 노동시장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 정하는 내용뿐 아니라

-3대 고용질서* 확립, 건설·사내하도급 근로 자 보호,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강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균형있게 반영

* 3대 고용질서:서면근로계약 정착,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파견·기간제' 규제 합리화를 근거로 비정규 직 양산대책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파견업종'과 '기간제 예외범위'는 현행 법령 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노사의 의견을 들어 노동 시장의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2009년 6월 100만 실업대란설'을 제기하면 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추진 했던 것을 말만 바꿔 기간제 예외업종을 확 대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기간제한의 예외를 확대하고자하는 취지는 -기간제한을 엄격하게 운영하게 될 경우 나타 날 수 있는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해소하거나

- -기간제한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자는 것임.
- ○기간제한 예외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 가겠음.
 - 3.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업종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법불량 일자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 편들기 아닙니까?
- ○현재 우리나라의 파견시장은 파견허용 업무 가 협소하여 시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파견의 긍정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파견대상 업종 조정과 관련해서는
- -파견수요가 적은 업무는 제외하되, 파견수요 가 많으면서도 해당 업무의 정규직을 대체할 가 능성이 적은 업무는 추가하는 방식 조정이 필요 하며
-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허용 업무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파견허용 업무조정 시 노사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4. 지금도 청소, 경비업무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임. 신설기업과 위탁계약기간이 있는 청소·경비업무를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할 경우 폐업신고·신규법인 신설 등 제도를 악 용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 엇인가?
- ○국가고용전략에서 예시되고 있는 신설기업의 경우는 사업초기 인력수요 예측이 어려워 인력운 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 -청소·경비는 위수탁계약기간 동안 고용계약 관계가 정하여 지는 업무의 특성상 사용기간 제 한의 의미가 크지 않아 기간제한 예외로 검토한 것임.
-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 와 관련하여 악용사례가 없도록 다각적 검토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 5. 정부의 고용질서 강화방안은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이나 점검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사안이 아닌가? 그럼에도 국가고용전 략에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 아 닌가?

- ○임금체불 청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을 위해 우리 부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최 대한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1,000명)으로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공 등 노동관계법 준수 를 위한 감독 및 점검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부족한 근로감독관 인력상 한계를 극복 하면서도 3대 고용질서(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적 인 대안을 마련한 것임.
- -이를 위해 노동관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 할 수 있도록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의무 화하고
-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한 명단공표·신용제 재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 -또한 민간 감시단(4230 지킴이) 및 일제신고 기간 운영 등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준 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 6.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짝퉁 버전 아닌가?
-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자 여성이 다수이고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한 간 호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유휴간호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
- -구직자(유휴간호인력)에게는 전문적인 직업훈 런 및 취업알선을 시행하고, 사용자(병원)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채용을 유도하는 사업
-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제고 및 일·가정 양립 등 국가고용전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
-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고용창출보다는 환자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양 사업은 근본목적·지원대상·방식 등이 상이하다고 봄.
- 7. 병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면, 정부가 1년 동안 1인당 4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2009년 말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 등록자 14만여 명이지만 부족

인력은 2만 2000명에 불과.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간호사직을 떠나간 여성들을 불량 일 자리로 유인할 수 있다고 보는가?

○출산 및 육아부담 및 교대제 근무 부담 등이 간호인력들이 이직하는 주된 사유임을 고려하면

- * 간호사 이직 사유 : 타 병원 이직 35.6%, 결 혼·출산·육아 14.3%, 불규칙한 근무시간 10.4%, 낮은 임금 6.6% <병원간호사회 08. 12월>
- -출산·육아시기를 지난 3~40대 유휴간호인 력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봄.
- ○동 사업은 간호 인력을 비롯하여 시간제 근 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 * 1인당 임금의 50%(월 40만 원 한도)를 지원 할 계획임.
- -유휴간호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8.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그리고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 제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정은 고용창 출기반 확대 및 생산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20 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로 합의(10.6.8,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채택)
- ○장시간 근로의 개선은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오래된 근로관행·문화의 혁신 및 국민적 지지가 중요하므로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장시간근로 개선 대책 을 수립하여 노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파견허용업무 조정 및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 관련
- ○파견허용 업무 조정 및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의 시각이 서로 다르므로
-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 쳐 추진할 예정임.
- 9.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 도의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노동비용 증가보 다 적어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투자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지원하는 현행 임 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지 못하고 있어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금액뿐만 아 니라 고용창출인원을 지원 요건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를 고용촉진형으로 유도하는 등 긍정 적인 효과가 기대됨.

10.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각 부처가 먼저 요청할 때만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데,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용 중 심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사전에 고용영향평 가를 해 결과가 나쁘면 제재를 가하는 등 최 소한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동의하는가?

○동의함.

○다만 평가제도가 아직 초기단계라 부족한 점 이 있는 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

-주요 국책사업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하여 전문성 및 역량을 높이면서

-평가결과와 재정편성을 연계하는 방안도 관 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박준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주무부처가 경기 및 고용전망, 고용영향평 가, 고용 시장 구조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대 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배분 하는 Top-Down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 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일자리 사업예산은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 습니다.

○(Bottom-up 방식) 개별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

○(Top-down 방식) 경기·고용여건 등을 감 안하여 일자리 예산 전체 및 일자리 예산 내 6개 분야*의 총량을 판단

* 직접 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 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인센티브, 실업급여 등

□향후에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고용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총괄기능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0. 7월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개편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부처 간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등 노동시장 측면에서 평가·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총괄 조정 담당,
 -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사업 평가,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 ○금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 * 고용보험 연구용역비 6억 원 활용하여 시범 사업 추진
- ○내년에는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용영 향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 11년 예산안에 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운영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중 상당부문의 사업은 2008말 경제위기 시 민간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한시적인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신설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정부도 11년 예산안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 ○단기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10→4만명), 디딤돌 일자리 사업(1만 명 → 2500명) 등축소하고
-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정인턴제, 학습보조인턴교사채용 등을 폐지했습니다.
- □향후에도 고용여건, 사업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한시사업을 폐지·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2011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유지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기회복을 반영한 예산조정이 미흡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경기와 민간 고용시장이 개선되어도 단기간 내 민간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이 존재하고,
- ○희망근로사업의 일시적 중단에 따른 지역 고 용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완화할 필요가 있어
-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 □단, 경기회복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는10 → 4만 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참 고] 10년 희망근로사업 및 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비교

구 분	10년 희망근로사업	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목적	○취약계층 실업대책	○취약계층 실업대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규모	○10만 명(상반기)	○4만 명 * 상하반기 각각 2만 명
예산규모 및 재료비비중	○5,727억 원 -국비 4,456(78%), 지방비 1,271(22%) ○인건비(60%), 재료비(40%)	○2,484억 원 -국비 1,240억(50%), 지방비 1,240억(50%) 운영비 4억 원 * 인건비(60%), 재료비(40%)
사업기간	○상반기 4개월 (10. 3~6월)	○상반기 4개월(11.3~6월) ○하반기 4개월(11.8~11월)

		,	
구 분	10년 희망근로사업	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소득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1.35억 원 이하인 자	재산 1.35억 원 이하인 자 원칙	
참여자	○취약계층 실업자 위주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중심 -청년 미취업자 20% 우선 채용	
급여	○월 83만 원	○월 83만 원 -전문기술인력 등 탄력적용	
상품권	○임금 중 30%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도입· 운영	
대상사업	○10대 친서민·생산적사업	○친서민·생산적 사업 및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희망의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족 지 원, 산학관 맞춤형 취업지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의 취업연계효과를 제고하 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4대 보험 간 정보연계, 사업장 점검 등을 통 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현재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국회 계류 중
-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의 취업연계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 ·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 사업 종료 후 사회적기업육성, 청년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기업으로의 취업 을 지원하는 사업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 * 사회적기업 육성 : (10) 1,487 → (11안) 1,652억 원 중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 (10) 1,065 → (11 안) 1.456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10) 289 → (11안) 574억 원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민간기 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평가 시 직업훈련 실적 등을 평가)

○일자리 사업 종료 시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에 구직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년 세제개편에서 여느 때와는 달리 고용 창출을 최우선 실천과제로 앞세운 것은 긍정 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세제개 편안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한 것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현행 '물적자 본'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로 지원방향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 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 형 투자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적극적인 '구조개선형 고용창출'을 위해 청 년고용의 문제를 국가정책의 중심에 놓아 장 기적인 청년일자리창출 세제의 비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고용문 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발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등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가 필요

○다만 구조적 문제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 요하므로 적극적인 세제·재정지원을 통한 일자 리창출도 필요

-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문제 해소를 세제측면 에서 지원하고자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맞춤형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 * 기업이 대학 내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를 설치 · 운영하고 대학에 지급한 비용을 25% (대기업 3~6%) 세액공제

○지난 3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 소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증가 1인당 300만 원) 및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 원제도(3년간 월 100만 원 소득세 비과세)를 도입

- ○현행 투자금액 중심에서 고용증가인원에 따라 추가 세제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고용친화적 세제개편방안이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과
- * 임투 5%(대기업의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투자 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고용증가 1인당 1000만 원, 청년 고용시 1500만 원)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개선형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는 현장 중심의 산업인력양성 에 대한 세제지원 등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세 제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배은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임투제도 및 고 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주요내용은?

- □금번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과밀권역외 설비 투자에 대해 7% 세액공제하는 현행 임투제도를 개정하여
- ○수도권 과밀권역외 설비투자에 대해 5%(대기업의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투자는 4%) 세액 공제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를 추가 지원*하도록 함.
- * 고용증가인원 × 1,000만 원(청년 고용 시 1 인당 1,500만 원)